

부산지방법원 2024. 9. 25 선고 2024나47203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부산지방법원 2024. 9. 25 선고 2024나47203 판결

부산지방법원 2024. 1. 17 선고 2023가소2008 판결

전문

원고, 항소인 A

피고, 피항소인 1. B

2. C

변론종결 2024. 8. 28.

판결선고 2024. 9. 25.

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. 1. 17. 선고 2023가소2008 판결

주문

-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-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7,000,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망 D은 2019. 5. 17. E과 부산 부산진구 F 단독주택 1층을 임대차보증금 3,500만 원, 임대차기간 2019. 5. 24.부터 2021. 5. 23.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‘임대차기간 만기 시 임대인인 E이 보증금을 실제 입금한 원고에게 반환하기로’ 약정하였다(이하 ‘이 사건 임대차계약’이라 한다).

나. 원고는 E에게 2019. 5. 17. 350만 원을, 2019. 5. 24. 3,150만 원을 각 송금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.

다. 그 후 망 D은 2020. 10. 1. 사망하였고, 그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원고와 피고들 그리고 G, H이 있었다.

라. E은 이 사건 임대차기간 만료 후인 2021. 6. 30. 망 D의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는바, 원고에게는 1,100만 원을, 피고들에게는 각 700만 원을, G, H에게는 각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호증, 제3호증의 1, 2, 제4, 5, 7호증, 을 제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 주장의 요지

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원고에게 있음에도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E으로부터 각 7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,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각 7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3. 판단

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6호증의 1,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① 망 D이 사망한 후 피고들이 2020. 12. 4. 원고와 G, H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귀속 여부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점, ② 원고는 2021. 6. 30. E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원고와 피고들, G, H에게 나누어 송금한 후 작성하여온 별지와 같은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에 서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망 D의 상속인들의 합의에 따라 E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는 달리 망 D의 상속인들에게 위와 같이 나누어 지급하였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나누어 지급한 것에 원고가 동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, 피고들이 E으로부터 지급받은 각 700만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각 700만 원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상균, 판사 고종영, 판사 금덕희

별지